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3.11. 4(월)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13.11.12(화)

다. 상정일자 : 2013.11.12(화) 제1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 조국을 위해 희생 헌신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보훈영예수당을 인상하고, 조례 문구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코자함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금숙)

-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691명에게 지급하는 『보훈영예수당』을 현재 월 5만원에서 2배인 1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의견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사무로 인정되어 국가차원의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리군 보훈영예수당 지급은 2010년도 “참전유공자”에게만 “명예수당”으로 월3만원을 지급(108,000천원)하던 것을 2012년도 부터 “국가보훈대상자”까지 확대하여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만원, 2014년도부터는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연간 소요예산을 분석하면

- 2012년도 월 3만원의 경우 261,600천원이 소요되었고
- 2013년도 월 5만원의 경우 420,600천원이 소요가 예측되고 있으며
- 2014년도부터 월10만원으로 할 경우 연간 828,000천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될 경우 연간 예산소요액은 최초 지급 시점인 2010년도 보다 8배, 보훈대상자 확대시점 보다는 3.2배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우리 군이 공무원 인건비 자체충당이 어려워 교육경비 편성제한 자치단체로 분류되어 있고 2018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막대한 자원부담 문제, 어려운 지역경기 회생문제 등 해결할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요불급하지도 않고 지역현안과 밀접하지 않은 복지수요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런 사항이 선례가 되어 계속적으로 발생될 경우 지방재정 건전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행정의 선심성 예산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고 타 단체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심사로 우리군 재정운영에 나쁜 선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군에 거주하는”을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 “5만원의”를 “10만원의”로, “한다)과 사망 시에는”을 “한다)을 지급하고, 수당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을 “제6조에 따른 보상을 받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을 “제22조에 따른 보상을 받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의 규정”을 “제2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